

2025 조총환·양건 테마 형사소송법 판례·기출증보판  
정오표(초판기준)\_2  
-개정 형사소송법·형사소송규칙 반영-

[제2권]

P.339

피해자/ ① 내용 아래에 규칙 제134조의 14 (2025.9.1.신설) 추가

☞ 법 제294조의 4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(제1항).

1. 사건번호, 사건명
2.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
3.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
4.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

☞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294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(제2항).

☞ 재판장이 열람·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,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(제3항).

P.339

피해자 /③을 아래 내용으로 대체

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(제294조의 4 제3항: 2025. 3. 18. 개정).

☞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하면 허가하여야 한다. (×) ⇨ 재판장은 범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하면 허가하여야 한다. (○: 원칙)

P.339

④와 ⑤를 추가

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(제294조의 4 제4항).

☞ 재판장이 법 제294조의 4 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,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(규칙 제134조의 14 제4항: 2025.9.1.신설).

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(제294조의 4 제5항: 2025.3.18.신설).

**기존 ④를 ⑥으로 하고, 제294조의 4 제6항을 제294조의 4 제7항으로 수정**

#### P.341

##### 제294조의4 제3항

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9조의 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3. 18.>

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3. 18.>

기존 ⑤ ⇨ ⑥

기존 ⑥ ⇨ ⑦

### [제3권]

#### P.106

##### 신청방식

2.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(규칙 제132조 제1항).

3.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(규칙 제132조 제2항).

4.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(규칙 제132조 제3항). [전문개정 2025. 2. 28.]

기존 3 ⇨ 5

#### P.107

##### 증거조사 실시/증거조사 방식

##### 하단에 추가

📁 녹음·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·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(규칙 제134조의 8 제3항).

📁 제3항의 경우 재판장은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·녹화매체 등의 중요

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(규칙 제134조의8 제4항: 2025. 2. 28.신설).

p.143

**‘피해자의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’ 아래칸에 추가**

<b>금전공탁과 피해자 등 의견청취</b>	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를 포함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294조의 5 제1항: 2024.10.16.신설). 📁 법 제294조의 5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(규칙 제134조의 13 제3항: 2024.12.31.신설)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P.180

05

**해설** ㉠ ○ :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법 제29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(규칙 144조 제1항 제4호: 단서 신설 2025.2.28.).